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소방공무원징계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기관별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중징계의 관할권을 상향 조정하고, 징계위원회 구성 시 퇴직공무원은 퇴직일부터 3년 동안은 소속하였던 기관의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며, 각급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다양한 자격을 갖춘 민간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보호기능 강화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관련 징계의결의 경우 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 개정('23. 4. 11.)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비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갑질 비위와 관련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하위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관할권 상향 조정(안 제2조 일부개정)

- 1)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경 이하(국립소방연구원은 소방령 이하) 및 각 시·도 소속기관의 소방위 이하에 대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사건을 신중히 처리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각 소속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던 것을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

나.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요건 개선(안 제4조제4항 및 제6항 일부개정)

- 1) 퇴직 소방공무원 위촉 시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소방기관의 경우,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한정함.
- 2) 회의 개최 시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하지 않도록 하여 다양한 자격을 갖춘 민간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명시함.

다. 성비위 징계의결 요구 시 전문가 의견 제출(안 제9조제3항제7호 및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 1) 성희롱·성폭력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시 관련 전문가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함.
- 2) 전문가 범위 및 의견서 서식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 안내(안 제18조제3항 내지 제7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 1)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할 수 있음.
- 2)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구체화함.
- 3) 피해자 요청에 따른 징계처분결과를 통보 서식을 마련하고, 통보받은 피해자가 그 통보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명시함.

마. 수사 중 징계절차 진행 중지 통보(안 제10조의2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 신설)

- 1)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등의 시효가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 등 시효의 기간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종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2) 이에 따라 징계 절차의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그 사실을 혐의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 통보 서식을 정하고자 함.

바. 기타 미비사항 개정(안 제2조, 제3조, 제8조 내지 제15조, 제17조 내지 제19조, 제19조의3조, 제21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일부개정)

- 1) 징계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내용 추가(안 제8조 일부개정)
- 2) 징계위원회 위원 제척사유 강화(안 제15조 일부개정)
- 3) ‘진술권 포기서’를 ‘출석 진술 포기서’로 개정(안 제12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일부개정)
- 4) 확인서 서식 규칙 이관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확인서’로 위임 규정 마련 및 확인서 서식 삭제(안 제9조제3항제2의2 일부개정 및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 5) 징계 단계 및 성격에 맞는 용어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9조 내지 제15조, 제17조 내지 제19조, 제19조의3조, 제21조 일부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에 대한”을 “구분에 따른”으로, “한다) 부과”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국립소방연구원의 경우에는 소방정인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경 이하인 소방공무원(국립소방연구원의 경우에는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한다) 요구 사건

3.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징계등 사건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하며, 각”을 “말하며,”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징계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징계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제4항의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을 “징계등 사건(제4항의 징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말하며, 각”을 “말하며,”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징계등 사건(중징계등 사건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를 “징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등 의결기관”을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소방기관(해당 소방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또는 시·도 및 그 소속 소방기관에서 근무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제4항 각 목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다.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다만,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소방기관(해당 소방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또는 시·도 및 그 소속 소방기관에서 근무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8조 중 “회의는”을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의 제목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징계의결등의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제5항제1호·제3호”를 “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징계등 의결”을 각각 “징계의결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징계등”을 “징계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으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심의 대상자”를 각각 “혐의자”로 한다.

2의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소방청장이 정하는 확인서

가. 비위행위 유형

나. 징계등 혐의자의 공적(功績) 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징계의결등 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9조제5항 중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심의 대상자가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혐의자가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등 의결 요구권을 갖지”를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로, “징계등 의결 요구권을 갖는”을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징계등 처분요구서”를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 요구서”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공무원범죄 처분 결과통보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징계등 의결”을 “징계 의결등”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혐의자에게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중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징계등 의결 기한)”을 “(징계의결등의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30일 이내”를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등 의결이”를 “징계의결등이”로, “징계등 의결 기한”을 “징계의결등의 기한”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심의 대상자의”를 “혐의자의”로, “심의 대상자에게”를 “혐의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심의 대상자의”를 각각 “혐의자의”로, “심의 대상자를”을 “혐의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심의 대상자의 주소”를 “혐의자의 주소”로, “심의 대상자에게”를 “혐의자에게”로, “심의 대상자의 소속”을 “혐의자의 소속”

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 대상자”를 각각 “혐의자”로 하고, 같은 항 중 “진술권”을 “출석 진술”로,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같은 조 제7항 중 “심의 대상자”를 각각 “혐의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심의 대상자의”를 “혐의자의”로, “심의 대상자가”를 “혐의자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 대상자에게”를 “혐의자에게”로, “심의 대상자는”을 “혐의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징계등 의결을”을 “징계의결등”으로, “징계등 의결의”를 “징계의결등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을 “중징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을 “중징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징계등 의결의”를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징계등 의결”을 각각 “징계의결등”으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심의 대상자”를 각각 “혐의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전단 중 “심의 대상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를 “혐의자, 징계의결등 요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심의 대상자”를 각각 “혐의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징계등 의결의 요구는”을 “징계의결등의 요구는”으로,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을 “징계의결등의 요구를”로 한다.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징계등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3. 해당 징계등 사건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제16조제2항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징계등 의결의 통지)”를 “(징계의결등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징계등의 집행)”을 “(징계처분등의 집행)”으로 하고, 같

은 조 제1항 중 “징계등의 집행권자는 징계등 의결”을 “징계처분등의 집행권자는 징계의결등”으로, “징계등 처분 사유”를 “징계처분등 사유”로, “징계등 의결된”을 “징계의결등 된”으로, “징계등 처분을”을 “징계처분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집행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수 있다.

④ 법 제75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말한다.

1.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가. 다른 공무원

나. 징계처분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및 산하 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직원

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
(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한다)

⑤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집행권
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
식에 따른다.

⑥ 제5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
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9조 중 “임용권자와 징계등 집행권자”를 “징계처분등의 집행권자와
임용권자”로, “징계등 집행권자가 강등”을 “징계처분등 집행권자가 강
등”으로, “징계등 처분”을 “징계처분등”으로 한다.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을 “징계의결등을
요구한”으로,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을 “징계의결등을 통지받”으로, “징
계등 의결 심사”를 “징계의결등 심사”로 한다.

제21조 중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징계등”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호 중 “진술권”을 각각 “출석 진술”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및 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 제4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징계위원회에 관하여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조(성 관련 비위의 징계의결등 요구시 전문가 의견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사실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2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집되는 징계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6조(징계처분결과 통보 안내에 관한 적용례) 제18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제3호 개정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석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사 건 명		
전문가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연락처
전문가 의견		

※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정도(신체·정신 및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작성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인적 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대상 사건	통보기관	수사개시 등을 통보한 수사기관명 기재	
	통보일자		
	사건번호		

위 사건에 대하여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 종료 통보 시까지 징계의결등의 요구 및 그 밖에 징계등 절차 진행의 중지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속 기관의 장) 직인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징계처분 대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관할 징계위원회		위원회 개최 일시	년, 월, 일
징계의결결과	※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4호서식 의결 주문란에 기재된 내용을 말함.		다수 비위 경합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징계처분권자 (징계처분제청권자)		징계처분일시	년, 월, 일
징계처분결과			

유의사항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의 내용(징계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결과, 징계처분권자, 징계처분결과 등)을 공개하는 경우 「형법」 제307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①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u>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사건을 심의·의결한다.</u>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① --- ----- ----- <u>구분에</u> <u>따른</u> ----- ----- ----- --- <u>한다)</u> ----- -----.
1. 소방청 소속 소방청 이하의 <u>소방공무원</u>	1. ----- <u>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u>
2.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청 또는 소방령인 <u>소방공무원. 다만, 국립소방연구원의 경우에는 소방청인 소방공무원을 말한다.</u>	2. ----- ----- <u>소방공무원(국립소방연구원의 경우에는 소방청인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 <단서 삭제></u>
<u><신 설></u>	2의2.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청 이하인 <u>소방공무원(국립소방연구원의 경우에는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한다) 요구 사건</u>

3.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

② 「소방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단서 신설>

1.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

2.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사건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징계위

3.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징계등 사건

② -----

----- 말하며, -----

----- 징계등 -----

--. 다만,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 징계등 -----

2. -----

----- 징계등 사건 -----

③ -----

이 관련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따라 관할한다.

1.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기관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방서 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도 간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④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소방청 및 시·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나. (생략)

----- 징계등 -----

-----.

1. 2. (현행과 같음)

② -----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기관-----

-----.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정 또는 법률 제16768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지방소방정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단서 신설>

라. (생략)

2. 중앙소방학교 · 중앙119구조
본부 · 국립소방연구원 · 지방
소방학교 · 서울종합방재센터
· 소방서 ·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에 설치된 징계위
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에 해당하는 사람
가. · 나. (생략)

다.

----- . 다만,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
무했던 적이 있는 소방기
관(해당 소방기관이 소속
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
속기관 또는 시·도 및 그
소속 소방기관에서 근무했
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
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한정하
다.

라. (현행과 같음)

2.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
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생략)

⑤ (생략)

⑥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 (생략)

제8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

다.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다만,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소방기관(해당 소방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또는 시·도 및 그 소속 소방기관에서 근무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라.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 하며, 제4항 각 목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
다.

⑦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의 비공개) -----

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①소
방공무원의 징계등 의결 요구권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은 소방청장. 다만, 「소방공
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
방공무원은 시·도지사를 말
한다.

2. (생 략)

--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
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은 ---.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
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
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
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항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
----- 징계의결등 -----
-----.

1. -----
-----.

----- 제5항제1호-----

-----.

2. (현행과 같음)

②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

② -----

----- 징계의결등 -----
-----.

----- 징계의결등-----.

③ ----- 징계의결등 -----
----- 징계등 -----

-----.

1. (현행과 같음)
2. -----

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
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2의2.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3. ~ 6. (생략)
<신설>

④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
계등 의결 요구와 동시에 제3항
에 따른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 징계의결등 -----

2의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소방청장이 정하는 확인서
가. 비위행위 유형
나. 징계등 혐의자의 공적(功
績) 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징계
의결등 요구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6. (현행과 같음)
7.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
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
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④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
의결등 -----
-----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① (생략)

② 소방기관의 장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등 의결 요구권을 갖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협의
자-----.
----- 협의자-----

-----.

⑤ 징계의결등 -----
-- 협의자가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

-----.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

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등 처분
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
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
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
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
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
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
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
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중 파
면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
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④ (생략)

-----.

1. -----
----- 징계처분 또
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 요구
서-----
--

2. -----
----- 공무원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3. (현행과 같음)

③ -----

----- 징계의결등-----

--. -----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징계등 의결 기한) ① 징계
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
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
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
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
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

제10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
의 결정)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
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
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
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혐의자에게 징
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
계등 절차의 중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으
로 한다.

제11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① 징
계의결등 -----

----- 징계의결등 -----
-----.

----- 30일 -----

-----.

② 징계의결등이 -----

라 중지되었을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등 의결 기한에서 제외한다.

제12조(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통지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 징계의결등의
기한-----.

제12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 혐의자의 -----

----- 혐의자에게 -----

----- 혐의자의 -

-- 혐의자의 -----

----- 혐의자를 -----

② ----- 혐의자의
주소-----

----- 혐의자에게 -----

----- 혐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통지서를 받은 소방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국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

자의 소속 -----
-----.

혐의자-----
-----.

③ ----- 혐의자

----- 출석 진술 -----

----- 징계의결등-----
-----.

④ -----
----- 혐의자-----

----- 징계의결등-----
-----.

⑤ ----- 혐의자

----- 징계의결등 -----

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⑥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출석 통지는 관보(시·도의 경우에는 공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출석 통지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출석 통지서

----- 징계의결등 -----
-----.

-----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⑥ --- 혐의자-----

-----.

-----.

⑦ --- 혐의자-----

-----.
--- 혐의자-----

-----.

⑧ ----- 혐의자의 -----

--- 혐의자가 -----

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심문과 진술권) ①징계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하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별지 제3호의 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

-----.

제13조(심문과 진술권) ① -----

----- 혐의자-----

-----.

② ----- 혐의자
에게 -----

-- 혐의자는 -----

--.

③ --- 혐의자-----
-----.

-----.

④ 징계의결등 -----

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⑤ (생략)

⑥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⑦ (생략)

제13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

-- 징계의결등의 -----

-----, ----- 중

징계등 -----

⑤ (현행과 같음)

⑥ 징계의결등-----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

----- 중징계등 -----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생략)

제13조의3(우선심사) ①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등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정년(계급정년을 포함한다)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③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

--.

1. -----
----- 징계의결등 -----

2.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우선심사) ① 징계의결등 -----

-----.

② 징계의결등 -----

혐의자-----

-----.

③ ----- 혐의자-----

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생략)

③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의결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

혐의자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 장계의결등 — _____

_____.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

징계등 심의 대상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증인, 피해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심의 대상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생략)

제15조(제척·기피 및 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의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

----- 협의자, 징계의결등 요구자-----

② -----

----- 협의자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제척·기피 및 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징계등 협의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징계위원회는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출석할 수 있는 위원 수가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를 충족하는 때까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심의 대상자에 관한 안전에

2. 징계등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3. 해당 징계등 사건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② --- 혐의자-----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혐의자-----

한정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임시위
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
다.

⑥ 제5항에 따라 임시위원을 임
명 또는 위촉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징계
등 의결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
로 보고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
야 한다.

제16조(징계등의 정도) ① (생
략)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
상자의 혐의 당시 계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제17조(징계등 의결의 통지) 징계
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
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

-----.

-----.

⑥ -----

----- 징계
의결등의 요구는 -----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
-----.

제16조(징계등의 정도) ① (현행
과 같음)

② -----
----- 혐의자-----

-----.

제17조(징계의결등의 통지) -----
----- 징계의결등-----
----- 징계의결등-----

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등의 집행) ①징계등의 집행권자는 징계등 의결의 통지를 받은 날(제2항의 경우에는 그 제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등의 결된 자에게 교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교부)함으로써 징계등 처분을 집행한다.

②징계등의 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그 집행권자가 상급기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그 집행권자에게 파면, 해임 또는 강등 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신 설>

-----.
제18조(징계처분등의 집행) ① 징계처분등의 집행권자는 징계의 결등-----

----- 징계처분등 사유 -----
----- 징계의결등 된 -----

----- 징계처분등을 -----
-----.

② 징계의결등-----

-----.

③ 집행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신 설>

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
실을 안내할 수 있다.

④ 법 제75조제2항제3호의 대통
령령등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말한다.

1.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
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
의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
화시키는 행위

가. 다른 공무원

나. 징계처분의 대상자가 소
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공직
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
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직
원

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

	<u>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u> 2. <u>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한다)</u>
<u><신 설></u>	⑤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집행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u><신 설></u>	⑥ 제5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u><신 설></u> 제19조(보고 및 통지) <u>임용권자와 징계등 집행권자가 다를 경우 징계등 집행권자가 강등,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등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u>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9조(보고 및 통지) <u>징계처분등의 집행권자와 임용권자-----징계처분등 집행권자가 강등-----징계처분등-----</u>

결과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와 그 소방공무원이 소 속한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제19조의3(심사 또는 재심사 청 구) <u>징계등 의결을 요구한</u> 기관 의 장은 「소방공무원법」 제29 조제3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 사를 청구하려면 <u>징계등 의결을</u> <u>통지받은</u>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u>징계</u> <u>등 의결 심사</u>(재심사) 청구서에 의결서 사본 및 사건 관계 기록 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 4. (생략) 제21조(징계등 처리대장) 징계위 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처 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u>징계 또는 징계부</u> <u>가급</u>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 -----. 제19조의3(심사 또는 재심사 청 구) <u>징계의결등을 요구한</u> ---- ----- ----- ----- <u>징계의결등을</u> <u>통지받</u>----- ----- <u>징계</u> <u>의결등 심사</u>----- ----- ----- -----. 1. ~ 4. (현행과 같음) 제21조(징계등 처리대장) ----- ----- ----- ----- <u>징계등</u>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운영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7062